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2024년 05월 27일 다음과 같이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투자계약(이하 "본 계약(서)")을 체결한다.

1. 투 자 자 : 중소기업은행 (이하 "**투자자**")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법인등록번호:110135-0000903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대표자 은행장 김 성 태

2.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집합투자업자")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1304164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대표이사 조 재 민

3. 투자기업 : 주식회사 에임스(이하 "투자기업")

법인등록번호 : 110111 - 6805604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205동

504-506호(문정동, 파크하비오)

대표이사 최 성 훈

4. 이해관계인 : 최 성 훈 (이하 "**이해관계인**")

주민(법인)번호: 850220 - 116941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504동 405호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당사자 전부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다만, 중소기업은행은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본건 편드")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본건 펀드에 귀속한다.

다 유

제 1 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신주의 발행사항)

투자기업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다.

-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수권주식수): 200,000,000 주
- 2. 기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량 : 기명식 보통주 132,000 주, 종류주식 17,620주
- 3. 1주의 액면금액: 500 원
- 4. 금차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나. 주식의 수량 : 7.490 주
- 5. 투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내용
 - 가. 주식의 종류와 수량 : 기명식 종류주식 7.490 주
 - 나. 1주의 인수가액: 133,500 원
 - 다. 인 수 총 액:999,915,000 원
 - 라. 주금납입금액: 999,915,000 원
 - 마. 주 금 납 입 일 : 2024 년 05 월 29일
 - 바. 주금 납입장소 : 신한은행 문정역금융센터

제2조(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 1.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 2.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 건 종류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 4. 투자기업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투자기업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투자기업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 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 6. 투자기업이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 7. 투자기업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별지4.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제3조(진술과 보장)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1. 투자기업이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고 기업회생, 워크아웃, 파산, 청산 등을 신청하거나,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함.
- 2. 투자기업은 투자자에 대하여 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 양도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본 계약서상 권리행사를 제한할 만한 법령 등 어떠한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함.
- 3.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별지1. 투자기업의 자본에 관한 사항 외에 투자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불리한 매출거래 등의 사실이 없음.
- 4.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5. 투자기업이 금융기관과 기존에 체결한 차입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체결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6. 투자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
- 7. 투자기업은 투자자에 서면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이 없음.
- 8. 투자기업은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으며, 투자기업 운영과 관련된 제반보험에 가입되어있음.
- 9. 투자기업이 투자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상 미래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조(거래완결일 전 해제)

-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거래완결 전에 한하여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선행조건 불충족 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24년 06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및 아니하는 경우 및 선행조건이 충족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의 완결)

① 투자자는 남입기일(또는 투자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의 소정의 선행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제5호에 따라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 ② 투자기업은 거래완결일 다음날에 본 건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 2. 본 건 종류주식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 ③ 투자기업은 거래완결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주발행과 관련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완료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투자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

제6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의결권 1표를 갖는다. 또한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후의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 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거래완결일 익일)로부터 10년까지 하고, 동기간(이하 "**존속 기간**"이라 함) 만료 다음날부터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전환 된다. 다만, 제10조에 의해 투자자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한다.

제7조(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 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u>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 %</u>의 현금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본 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현금배당의 경우 제3항의 기한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u>연복리 6 %</u>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기업이 투자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기업은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투자기업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는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미지급된 배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청산 직전까지의 미지급 배당금을 포함한다.
-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③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본 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되 투자기업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투자기업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투자기업의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3.투자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투자기업이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 4. 투자기업의 신규 지분증권 발행, 보통주주의 구주 처분(보통주주에 대한 공동/우선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같이 매도되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 매각분도 포함) 및/또는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지분증권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는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투자기업에 제출한다.
- 2. 전환은 투자자가 제2항 제1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2항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투자기업은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고 전환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 1.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 2. 투자기업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을 발행할 경우에 전환가격도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신주인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투자기업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투자기업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투자자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발행 전 투자자가 보유한 종류주식수

Ac: 발행 후 투자기업의 총발행주식수(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산)

Bc : 발행 전 투자기업의 총발행주식수(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산)

- 5. 투자기업이 타사와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하 "합병 등") 시 교환비율 또는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6. 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투자기업이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8. 위 각 호의 사안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투자기업이 발행할 수권주식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부터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상환 등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 상환청구기간 : 거래완결일 다음날로부터 <u>3</u> 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2. 상환방법 :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은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 단, 본건 주식의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
- 3. 상환가액 : 투자자의 본 계약서상 주식인수총액과 주식인수총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u>연복리 5 %</u>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 4. 투자기업이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 발생할 경우, 투자기업은 제3호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제2호에서 정한 상환일 익일부터 실제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제27조제2항의 손해금율에 의한 연체료를 상환가액과는 별도로 투자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청구기간 전이라도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1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기한 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투자기업은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상환청구하는 날부터

상환완료시까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준용하여 본건 종류주식을 상화한다.

④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본조의 상환청구를 받은 경우 상환을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법률적 조치(상법이 정한 준비금의 감소제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한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투자기업은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 ②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별지3. 투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제공 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형위를 할 수 없다.
-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투자기업을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더라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④ 이해관계인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확약하기 위하여 거래완결일까지 별지4 양식의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출한다.

제14조(서면동의 사항)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투자기업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투자자의 서면동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5항 제2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1. 투자자의 주주 지위에 불리하게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2. 투자기업의 감자 등 자본의 변동 : 투자자의 지분율 변동을 야기하는 투자기업의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일체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3.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분할, 분할합병 등 투자기업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경을 할 경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 신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및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협약」등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 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5. 투자기업이 제3자에 대해 직전년도 자산총계의 5%이상(잔액기준)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업이 관계회사 등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관계회사에 대해 투자,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 6. 투자기업이 본건 투자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이나 포기, 그 밖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7.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신주인수, 임직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경우
- 8. 최다출자자 변경

제15조(사전협의 및 사후통지사항)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주요안건
- 2. 사업계획(자금계획 포함) 및 예산편성
- 3. 지분율 5%이상 보유 주요주주의 주식내용 및 주주의 변동에 관한 사항
- 4.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 5. 상장의 시기, 방법 및 주가에 관한 사항
- 6. 대표이사의 변경
- 7.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제출한다.

- 1.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가. 결산재무제표(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 나. 당기 사업(실적)보고서
- 다. 차기 사업계획서
- 2.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 가. 분기별 매출 현황
- 나. 분기 중 사업진행상황, 기술개발 상황 등 주요 경영현황
- 3. 발생즉시
-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당좌거래 정지사유 발생
- 나.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 다.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게 된 때
- 라.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 마. 기타 투자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투자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 ② 투자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자료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상태, 경영실적, 사업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업공개 의무)

- ① 투자기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기업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기업공개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지체없이 공개하기로 한다. 투자기업이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업무감사)

- ① 투자기업은 [2024]회계연도부터 투자기업의 비용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9조(시정조치)

투자자는 감사결과 또는 투자기업의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투자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삭제됨)

제21조(비용부담)

제18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투자기업이 부담하며 투자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투자기업이 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 4 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2조(투자자의 주식 처분)

- ① 투자자는 본건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투자기업의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위하여 회사 IR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23조(우선매수권)

- ① 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제22조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처분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업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정보,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투자자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주식매매가격은 매매쌍방이 합의한 가격으로 한다.
- ⑤ 이해관계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거나 매매가격의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소유하는 투자기업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의 설정 등 투자기업에 대한 주식 지분율을 변경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처분도 할 수 없다.

②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다른 주주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한다.

제25조(공동매도권)

- ①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이하 "공동매도권") 가진다.
- ② 이해관계인이 투자기업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정보,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양수예정자가 이해관계인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인과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한,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 ⑤ 투자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만일 투자자의 공동매도대상주식과 이해관계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대상 주식의 합계가 양도 상대방이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수보다 크다면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행사주식이 우선적으로 매도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자 보유의 해당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 ⑥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공동매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 5 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26조(계약위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①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완결에 이르게 한 경우
- 2. 제3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 3. 제12조의 투자금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4.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에게 위.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경우

- 6. 투자기업의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유출하거나 처분한 경우
- 7.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책임경영위반행위 ("책임경영위반행위"라 함은, (i)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회생. 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유용 등, (ii) 명의대여, 사해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을 말한다)를 한 경우
- 8.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9. 투자기업이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경우
- 10.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투자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 11. 투자기업의 중요자산 또는 주사업장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된 경우
- 12. 투자기업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되는 경우
- 13. 투자기업이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 투자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15. 투자기업에게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 16. 그 밖에 투자기업의 경영,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악화요인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시정요구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자신에게 해당 사유의 발생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는 다음의 각 호를 합산한 금액을 본 계약에 따른 인수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매수청구 대상주식수를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1. 본 계약서상의 주식인수총액
- 2. 제1호 금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회수일까지 <u>연복리 10 %</u>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입된 배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④ 제2항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자가 지정하는 지급기한 내에 그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주식이전의 대가로

투자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대금 지급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이 주식매수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위 주식매수대금 및 동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제27조 제2항의 손해금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노력으로 제3자와 투자자 사이에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대금이 완납된 때에는 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 ① 제2항의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투자자는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제27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의 예정)

- ① 투자자는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각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자신에게 해당 사유의 발생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거 투자자가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서상 주식인수잔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회수일까지 <u>연복리 10 %</u>의 율에 의하여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투자자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실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본 조 제2항의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 6 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28조(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요구, 청구 등(이하 "통지")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의 주소로 직접전달(상업서류 송달회사에 의한 전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기우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통지는 직접전달의 경우에는 전달 시에,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각각 상대방 당사자에게 '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아래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주소변경 통지를 게을리 함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는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자가 부담한다.

"투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울지로 79, 수탁영업부 [전화] 02-729-6923

[이름] 중소기업은행

"집합투자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전화] 02-767-3685

[이름]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기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205동 504-506호(문정동, 파크하비오)

[전화] 02-430-9081

[이름] 주식회사 에읶스

"이해관계인"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504동 405호

[전화] 010-9741-0811

[이름] 최 성 훈

제29조(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당사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 2. 당사자가 다른 출처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3.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정보
- 4. 제공한 당사자가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정보
- 5. 법령에 근거하여 또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30조(소송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다음에 기재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1. 서울중앙지방법원
- 2. 투자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 3. 본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자의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 4. 투자자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영업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받은 영업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관합법위

제 7 장 특약사항

제31조(특약사항의 효력)

톡약사항은 본 투자계약서의 본문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32조(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이하 날인을 위한 여백)

투자자: 중소기업은행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법인 등록 번호 : 110135-0000903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대표자 은행장 김 성 태

위 대리인 수탁사업부장 이 다 남 (현)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법인 등록 번호 : 110111-1304164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대표이사 조 재 민

투 자 기 업 : 주식회사 에임스

법인 등록 번호 : 110111-6805604

주 소 : 서울시 송파대로111 205동 504-506호(파크하비오,문정동)

대 표이 사:최 성

이 해 관 계 인 : 최 성 훈() 주민등록번호 : 850220-11641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빛메종그랑메종 504동 405호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직 성명					

본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이해관계인	3/62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이해관계인	(1)
1-11-1 M D	이해관계인	(인)

[별지1]

투자기업의 자본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500 원인 보통주 132,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7,620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 같음.

1. 주주별 소유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기타
최성훈	66,571	42.37%	
비즈모델라인	24,000	15.28%	
머큐리	14,286	9.09%	
클래드	12,000	7.64%	-
서석호	6,000	3.82%	
남진호	5,714	3.64%	
김상우	3,429	2.18%	
신용보증기금	8,810	5.6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810	5.61%	
중소기업은행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7,490	4.77%	
합 계	157,110	100	

2. 전환사채

회차	총 발행가액	미전환금액	전환가액	전환기간
해당사항 없음				

3. 신주인수권부사체

회차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자	부여주식수	행사가액(원)	행사기간	행사방법
해당사항 없음				

[별지2]

투자금 사용 용도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본 투자약정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투자금 사용용도	사용금액	비교
마케팅, 개발비, 인건비 등 제반	999,915,000 원	

[별지3]

투자금 사용내역서

중소기업은행(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귀중 당사는 상기 투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며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아 래

투자금역	ļi T	9	99,915,000	원	계약'	일자	2024. (05 . 27.
사용일자	사용금	구액	사용처	시	용내역	(현금, 7	방 식 녦좌이체, 표)	비고
					•			

㈜ 세금계산서, 통장 및 영수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투자기업: 대표이사:

[별지4]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I. 퇴사제한

제 1 조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계약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은 계약서 날인으로 갈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성훈	1985. 2. 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504동 40	05호

제2조 퇴사 제한 기간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투자기업의 기업공개가 완료되는 날 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 3 조 위반시의 효과

위 퇴사제한 약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은 퇴사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위약벌: [급 50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계약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은 계약서 날인으로 갈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성훈	1985. 2. 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504동 405호

III.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투자기업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투자기업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경업지위의 취임 금지

-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u>경업금지의무자</u>'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투자기업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 ② 경업금지의무자는 투자기업을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투자기업의 동의 없이는 투자기업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 3 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의무자는 투자기업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투자기업을 퇴사한 날로부터 2 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투자기업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투자기업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 4 조 약정의 종료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기업공개가 완료되는 날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위반의 효과

-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 내지 증권을 투자자에게 지급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원 내지 증권이 [금 500,000,000원]에 못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금 500,000,000원]을 투자자에게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경업금지의무자가 거래완결 전에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4조 제1 항의 해제 사유가 된다.